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9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가. 고려인동포는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

나. 고려인동포 유학생은 해당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로서 국내 유학, 이주·정착 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
다. 이에 충청북도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고려인동포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고려인동포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지원계획 수립, 지원 사업, 유치 활동 등(안 제5조 ~ 안 제7조)

다.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가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고려인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우리 동포이지만 그동안 소외되어 왔음
-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려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(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즈베키스탄)을 방문하여 고려인동포의 대한민국 이주 의사(특히, 청년층의 대한민국 유학 희망 및 방문 의사), 현장 실태 등 고려인동포 유학생 유치에 관한 정책을 확인했음
- 이에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)의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(이하 “고려인 유학생등”)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함함

나.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

- 이 조례안은 고려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유학생화와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⁷⁾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

7) 지방자치법 [시행 2024. 5. 17.]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(발췌)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- 그 밖에 입법예고(2025. 1. 14. ~ 19. / 제출된 의견 없음)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(외국인정책추진단 / 수용[조항 추가 일부 문구 수정 등])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

다. 주요 내용 검토

- 이 제정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, 각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
- **안 제1조와 안 제2조**는 목적 및 정의 조문으로
 -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 및 도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규정임을 밝히고 있으며,
 - “고려인동포 유학생”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
- **안 제3조**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지원 및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함
- **안 제4조**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‘다른 조례와의 관계’에 관한 사항으로
 -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의 외국인과 지난해 12월 발의된 「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외국인 유학생 규정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
- **안 제5조**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으로
 -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을 설정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함

- 특히, 지원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조례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함
- **안 제6조**는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적응교육,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 장학금 지원, 유학 종료 후 취업·창업 연계 등 지원사회 정착 지원 등 고려인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음
- **안 제7조**는 고려인 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,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내용이 적절함
- **안 제8조**는 제5조부터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, 지원사업과 유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함
- **안 제9조**는 고려인 유학생들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

라. 그 밖에 검토 사항

- 고려인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전담 부서인 **외국인정책추진단**은 ‘우리민족의 일원인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, 유치 지원, 각종 사회적응 활동 및 분야별 추진을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’는 의견을 제출함(외국인정책추진단-357)

- 또한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‘충청북도의 고려인동포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은 타당하다’는 의견을 제출함(의사입법담당관-116)

마. 종합 검토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·정책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함
- (타당성) 이 제정안은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, 사업추진 및 유치활동, 전문 기관 등에 대한 업무위탁,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,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관계 부서에서는 K-유학생 제도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과 중복 및 충돌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사업수행이 필요함